

2024년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업 Re-스타트 프로젝트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 22조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조성을 위한 「2024년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업 Re-스타트 프로젝트 사업」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1.
금천구청장



1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4년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업 Re-스타트 프로젝트

2. 공고기간

- 공고기간 : 2024. 4. 1.(월) ~ 4. 16.(화) (15일간)
- 공 고 처 : 금천구청 홈페이지 (www.geumcheon.go.kr)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템e) (www.losims.go.kr)

3.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4. 4. 8.(월) ~ 4. 16.(화) 18:00까지 제출
- 접 수 처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템e) (www.losims.go.kr)

※ ①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템e(www.losims.go.kr)접속 → ② 업무시스템
바로가기 → ③ 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④ 사용자 소속 조직 등록(공모신청 시 필수)
→ ⑤ 보템e공모사업현황 중 '2024년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업 Re-스타트
프로젝트 사업' 선택 → ⑥ '신청' 선택

4. 지원내용 : 3개소, 선정기업당 최대 1천만원 이내

- 지원금액은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 부가가치세는 총 사업비에서 제외 (참여 기업에서 부담)
- 선정 기업 1회 외부 전문 컨설턴트 컨설팅 지원

5. 참여 대상

-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하며 금천구 의제(돌봄, 환경, 교육) 해결에 참여의지와 역량을 갖춘 아래 사회적경제 기업
 - 인증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일반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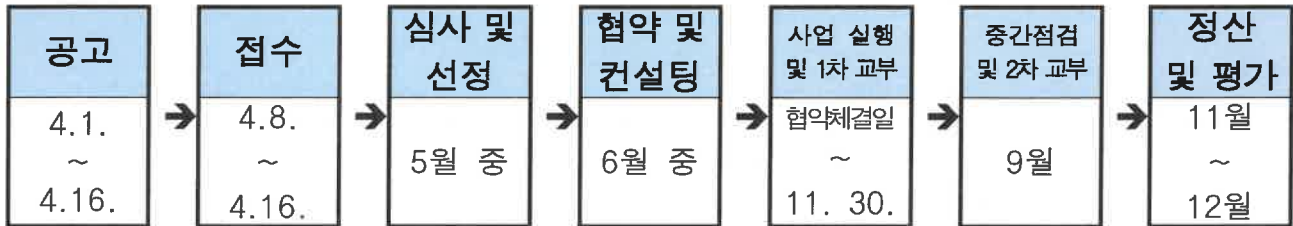
6. 참여 제외 대상

- 사업 공고일 전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임금체불 여부 등 확인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당해연도에 타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 사업개발비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지원사업 또는 항목이 다르더라도 당해연도 참여제한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기업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재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금천구청장이 참여기업 모집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 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7.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4. 12.

※ 지원기간 내 사업수행에 적절한 사업기간 설정

8. 추진 절차



9. 사업개발비 신청(사용)가능 및 불가 항목

○ (제안사항)금천의제(돌봄, 환경, 교육) 해결을 위한 사업내용 적극 권장

신청가능 항목	신청불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비용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직접적인 홍보자료/동영상 제작 등) ·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등 (수립된 전략에 근거한 기술개발, 사업다각화 비용) · 시제품 제작비, 예술·공연 기획 등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 BS/AS 등 고객관리 소요비용 ·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비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 기존, 신규 홈페이지 개발 및 구축 · 교육훈련비 (훈련과정 미개설 등으로 고용보험법상 재직자 훈련과정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업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운영비 ·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총 사업비의 20% 한도로 인정) · 회계감사비용, 소송대리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국비 지원이 가능한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훈련과정 미개설로 지원이 불가한 분야는 지원가능) · 그밖에 금천구청장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한 비용

2

심사 및 선정

1. 심사일시 : 2024. 4. 30.(화) 15:00 예정

2.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심의

○ 심사위원 : 민간전문가 3인 이내로 구성

3.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평가
사업 계획 (50)	사업지원의 필요성	30	○ 사업지원의 필요성 - 지원사업의 목표와 부합성 - 지원사업의 중요성 및 긴급성 - 지원사업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제시여부	정성 평가
	사업계획의 적정성	20	○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 목표 및 추진계획의 타당성 - 사업 계획 실현가능성 및 구체성	
기업 성장성 (30)	참여기업의 역량	15	○ 참여기업의 전문성 및 수행역량 및 성장가능성 - 참여조직의 경험 및 전문성 - 제품(서비스)의 기술적 우수성 및 차별성 - 금천 의제(돌봄, 교육, 환경)에 대한 전문성 - 지원사업을 통한 기업의 성장가능성	15 12 9
	기대효과	15	○ 결과물의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구체성 - 결과물의 향후 활용계획이 명확하고 구체적 정도 - 사업 이후 참여기업의 성장가능성 및 판로개척 가능성 - 결과물의 사회적가치 창출 및 파급효과	15 12 9
사회 적가치 점검 보고서 (20)	사회적 가치 창출	15	○ 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 정도 - 일자리 창출 정도 - 사회서비스 제공 정도 - 지역사회 공헌 정도	정성 평가
	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협력	5	○ 사회적경제 기업과의 협력 수준 - 사회적경제 기업과의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연 4회이상 - 사회적경제 기업과의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연 3회이상 - 사회적경제 기업과의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연 2회이상 - 사회적경제 기업과의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연 1회이상 - 사회적경제 기업과의 공식적인 협력활동 참여 없음	5 4 3 2 1

4 지원기업 선정

○ 심사위원별 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원 여부 및 금액 선정

※ 심사점수 평점 60점 미만인 경우 미선정

5 선정결과 발표: '2024. 5.(예정)

○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게재 및 개별 통보

3

제출서류

구분	번호	서류명
신청서류	필수	서식 1 · 사업신청서
	필수	서식 2 · 사업계획서
	필수	서식 3 · 예산운용계획서
	필수	서식 4 · 사회적가치 점검 보고서
	필수	서식 5 · 재정지원사업 참여 이력 확인서
	필수	서식 6 · 기업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필수	서식 7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필수	서식 8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증빙서류	필수	· 기업유형별 인증서 혹은 지정서 사본 · 사회적기업 인증서 (지역형 또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협동조합 설립신고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
	필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 사업공고일 이후 발행본
	필수	· 재정상태 확인서류(2023년 12월 말 기준)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제조업은 제조원가명세서도 반드시 포함 ※ 재정상태 확인서류는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필수	· 2024년 3월 말 기준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및 이체확인증 ※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등 확인
	필수	·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수료증 ㉓, ㉔ 중 택일 ㉓ 사회적기업 포털(SEIS)의 온라인교육 플랫폼 내 온라인 과정 「가치를 높이는 사회적가치지표(SVI)의 이해」 수료증 https://edu.seis.or.kr/front ㉔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 (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증은 접수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선택	· 금천구 지역사회 공헌 활동 확인 가능 서류 · 표창장, 감사장, 언론 보도자료 등

1. 지원대상으로 선정 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된 사업비 전액이 환수되며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2.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기한내 관련서류를 등록(제출)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 있습니다.
4. 증빙서류를 포함한 신청서 일체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기명날인 등 모두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금천구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합니다.
6. 「2024년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업 Re-스타트 프로젝트 사업」 지원관련 서류(회계서류 일체)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이 요청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7.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자 및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8. 선정기업은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예산 및 사업 내용 변경시에는 반드시 사업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시스템에 변경 신청해야합니다.
9. 선정기업은 사업 점검을 위한 중간보고서와 결과보고서 및 정산 보고서를 금천구에서 정한 방법 및 양식에 따라 보고해야합니다.
1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 제법규정, 지침을 준수하고, 2023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을 준용합니다.
11.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금천구의 내부기준

및 지침을 적용합니다.

12. 상기 공고사항은 우리 구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13.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공동체경제통합지원센터 주최하는 교육과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4 문의 사항

1. 접수문의 : 자치행정과 02-2627-2178

붙임 1. 신청서식 1부. 끝.